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6도11005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다. 청소년보호법위반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
행위등)
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등)
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
롱등)

2026보도7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들 및 검사(피고인 겸 피보호관
찰명령청구자 1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신현경 외 1인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6. 6. 17. 선고 2026노94, 2026보노4(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그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이하 '복제본'이라 한다)을 만들어 외부에서 그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이하 '유관정보'라 한다)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도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무관정보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등 참조).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복제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압수·수색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당연히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등 참조).

나.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최초 수사 및 제1차 영장의 발부

가) 피해자 공소외 1(여, 13세)은 2025. 1. 7.경 대구북부경찰서에 피고인이 2024. 12. 25.경과 같은 달 26.경 자신의 성을 매수하였고, 같은 달 29.경에는 피고인이 소개한 공소외 2를 만나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경찰은 위 진정서를 토대로 수사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소외 3(여, 14세)의 성을 매수하고 이들에게 공소외 2와 피고인 2를 알선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25. 2. 12.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이하 '제1차 영장'이라 한다).

다) 제1차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와 그 전자정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통화목록,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 사진·동영상, 인터넷 검색기록 및 메모 파일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특히 압수대상에는 이 사건 관련 문자 등뿐만 아니라 '불특정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대화한 문자, SNS 메시지, 사진·동영상 및 메모 파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2) 제1차 영장의 집행 및 별건 전자정보의 발견

가) 경찰은 2025. 2. 19. 제1차 영장을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갤럭시 Z폴드4 휴대전화 1대(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를 압수하였다.

나) 경찰은 대구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에 이 사건 휴대전화의 분석을 의뢰하였고, 분석이 완료된 전자정보를 외장형 하드디스크로 전달받았다.

다) 경찰은 2025. 2. 28.경 위 포렌식 절차에서 생성된 전자정보 복제본(이하 '이 사건 복제본'이라 한다)을 탐색하던 중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소외 3 이외의 다른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성매매 알선 관련 대화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동영상 등을 발견하였다. 경찰은 위 전자정보가 제1차 영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별건 전자정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복제본에 대한 탐색을 중단하였다.

3) 제2차 영장의 발부 및 집행

가) 경찰은 2025. 3. 5. 피고인이 2025. 2. 1.경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보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이하 '제2차 영장'이라 한다).

나) 다만 경찰은 제2차 영장을 청구하면서 제1차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발견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성매매 알선 전자정보도 압수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제2차 영장의 범죄사실에는 그와 관련된 성매매 알선 혐의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영장 담당 판사는 위 전자정보가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부분 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25. 3. 7. 제2차 영장을 집행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전자정보만을 선별·압수하였다.

4)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이 사건 복제본의 재탐색

가) 경찰은 2025. 5. 19. 공소외 1과 공소외 3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 및 공소외 4(여, 16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행 등을 범죄사실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나) 검사는 2025. 5. 20.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행위의 영업성 등을 증명·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였다. 위 보완수사 요구에는 제1차 영장에 따른 최초 탐색과정에서 발견되었던 공소외 4, 공소외 5[(가명 생략), 여, 17~18세] 등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성매매 알선 범행을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 경찰은 위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2025. 5. 31.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이 사건 복제본에 대한 탐색을 재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4, 공소외 5 등과 주고받은 성매매 알선 관련 대화내역과 메모 등(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을 선별·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였다.

5) 제3차 영장의 발부 및 집행

가) 경찰은 위와 같이 별도의 영장 없이 재탐색하여 선별·출력한 이 사건 전자정보를 토대로 공소외 4와 공소외 5 등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 및 알선 등의 범죄사실

에 관하여 2025. 6. 13.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이하 '제3차 영장'이라 한다).

나) 경찰은 2025. 6. 18. 제3차 영장을 집행하여 위와 같이 미리 선별되어 있던 이 사건 전자정보를 확인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다.

다) 한편 검사는 2025. 9. 16. 피고인을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경찰이 제3차 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제1차 영장의 집행이 종료됨에 따라 당연히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적법한 압수·수색절차에 요구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은 제1차 영장을 집행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그 전자정보를 복제한 다음, 이 사건 복제본을 이용하여 위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였다. 경찰은 그 과정에서 공소외 1, 공소외 3 이외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성매매 알선 관련 전자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고, 이를 제1차 영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별건 전자정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복제본에 대한 탐색을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시 다른 피해자들에 관한 전자정보를 구체적으로 탐색·선별하여 제1차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조치로 나아가지 않았다.

2) 경찰은 제2차 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의 범죄사실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성매

때 알선 혐의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그 청구가 일부 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위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는 제2차 영장의 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사실을 보완하여 별도의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제2차 영장 청구 중 발부된 부분만을 집행하였다.

3) 경찰은 2025. 5. 19. 그때까지 확보한 증거를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계기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약 3개월 전에 탐색을 중단한 이 사건 복제본을 다시 탐색하였다. 경찰은 그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전자정보를 구체적으로 선별·출력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증거로 편철하였다.

4) 기록상 경찰이 2025. 5. 31.경 이 사건 복제본을 재탐색할 때까지 제1차 영장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경찰이 그 전에 이미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경찰은 늦어도 위 구속영장 신청 무렵에는 제1차 영장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5) 제1차 영장의 집행이 종료되었다면 경찰은 그 영장에 따라 유관정보로 선별·압수되지 않은 나머지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이 공소외 4, 공소외 5 관련 범죄혐의에 관한 전자정보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면,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이 사건 복제본을 다시 탐색할 것이 아니라, 먼저 위 범죄혐의에 관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되어 있던 이 사건 휴대전화 자체를 대상으로 그 영장을 집행하였어야 한다.

6) 그런데 경찰은 제1차 영장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이 사건 복제본을 삭제·폐기

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던 중, 별도의 영장 없이 이를 재탐색하여 이 사건 전자정보를 선별·출력하고 수사기록에 편철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수사상 조치는 모두 위법하다.

7) 나아가 제3차 영장은 위와 같이 이미 선별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발부되었고, 집행대상 역시 그 전자정보였으므로, 제3차 영장을 사후에 발부받아 이를 압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객관적 관련성, 전자정보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

2)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장주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차 증거의 증거능력, 압수수색절차에서의 참여권 보장 및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영업으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으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수사절차와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리오해, 법령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_____

 대법관 천대엽 _____

대법관 신숙희 _____

주심 대법관 마용주 _____